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9. 19, 김선교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9.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안 제115조제1항)로 규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18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법률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폐업 등으로 개략적으로 규정한 채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폐업한 경우 중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계속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현정의원, 김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